

國內 契約者配當制度의 바람직한 改善方向

金 在 禹

(大韓教保 理事·代表計理人)

◀ 目 次 ▶

- I. 序 論
- II. 支拂能力과 契約者配當
 - 1. 支拂能力
 - 2. 支拂能力과 契約者配當과의 關係
 - 3. 國內 生保業界의 支拂能力
 - 4. 國內 生保業界의 契約者配當 與件
- III. 現行 契約者配當制度의 問題點
 - 1. 契約者配當의 先決要件 充足
 - 2. 配當規模의 適正性
 - 3. 配當의 安定性과 繼續性
- IV. 國內 契約者配當의 改善方向에 대한 意見
- V. 結 論

I. 序 論

국민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양적·질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한 國內生保는 契約者配當을 契約者權益保護를 위한 최고·최선의 정책으로 추진한

바 제도적으로는 '84년 3월 死差配當 도입을 시작으로하여, '88년 3월 契約者 利益配當制度를 본격 도입하기에 이르렀고, 실제 지급된 配當額도 현재 까지 업계 전체로 1조 3,000억원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市場開放과 新規參與로 生保사간의 경쟁격화, 타금융권의 生保시장 침투, 주식시장의 장기침체로 인한 자산이회율 저조로 生保는 成長性 鈍化, 收益性 惡化, 安定性 脆弱이라는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더구나 향후 金利自由化, 金融自律化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예대마진 축소로 수익성은 악화되고 고수익을 위한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져 리스크는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수익성이 악화되고 향후 불투명한 전망임에도 그동안 국내생보는 이익을 무시하고 경쟁만을 의식하여 높은 契約者配當을 하고 있으며, 더우기 일부사의 경우 부동산 임의평가나 채권수익의 조기계상에 의해 무리하게 配當財源을 조달함으로써 支拂能力이 취약해지거나 支拂不能狀態에 놓여있게 되었다. 또한 신설사의 경우 資本蠶

食狀態 또는 損失狀態로 배당재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연사업비 계상으로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더욱 큰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支拂能力, 配當規模의 適正性, 配當 安定性 및 繼續性 側面을 중심으로 현행 契約者配當制度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支拂能力和 契約者配當

1. 支拂能力

支拂能力이란 「모든 금전상의 부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을 보유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확보하는 것이 보험계약상 주어진 계약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따라서 어느 국가든 支拂能力 確保를 정책 및 감독당국의 최고·최선의 가치로 인식하고 지도 감독하고 있다. 특히 自律競爭體制가 정착된 국가에서는 가격(保險料 및 契約者配當)은 회사가 자율결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지만 支拂能力에 관한 사항은 엄격히 규제·감독하여 계약자를 보호하며 지불능력이 부족한 회사를 도산시키는 것은 制度化되어 있다.

支拂能力을 확보시키는 방식은 크게 3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 첫째는, 계약자에 대한 評價負債인 責任準備金을 충실히 적립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法定最小責任準備金을 정하여 그 이상 반드시 적립해야 하며 또한 법령상 원칙으로 규정한 純保險料式 責任準備金에 점차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의 K울방식은 이런 형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法定最小責任準備金을 정하여 이 기준이상 責任準備金을 적립하도

록 하고 여기에 각 보유자산별 개별리스크에 대한 여유준비금의 積立方式을 규정하여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支拂能力을 확보하게 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MSVR 및 RBCR이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는 두번째 방식과 유사하나 리스크에 대한 餘裕準備金을 개별자산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最小積立基準을 규정하여 그 이상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지불능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영국의 경우 이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최소 솔벤시마진을 책임준비금의 4%+위험보험금의 0.3%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綜合金融化, 金融自律化, 金利自由化 등이 진전됨에 따라 금리리스크, 가격변동리스크, 유동성리스크가 거대화되고 있어 첫번째 방식에 의한 지불능력 확보는 불충분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두번째 방식이나 세번째 방식에 의한 支拂能力 確保方式이 채택되어지고 있다.

국내에는 責任準備金積立에만 국한하여 감독하므로 향후 불확실한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우기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評價資産이 帳簿價보다 부족한 경우(移延事業費 計上 및 株式評價損 過多)에는 적립된 책임준비금중 일부는 계수상으로부터 계상된 허수가 되므로 더 큰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내생보의 경우 실질적인 지불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2. 支拂能力和 契約者配當과의 關係

契約者配當은 배당대상계약자에게 당장 돌아오는 과실이지만 支拂能力確保는 전체 계약자에게 保險金을 확실히 지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보험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이러한 지불능력

과 계약자배당간의 관계에서 지불능력 확보가 契約者配當보다 우선해야하는 근거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保險金支給義務는 계약상 주어진 기본적인 확정 의무이나 이익이 발생하면 실시하는 契約者配當은 직접의무가 아니며 附加的인 條件附義務이다.

둘째, 支拂能力 確保는 전계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나 지불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契約者配當은 일부 계약자에 한해 당장에만 유리한 것이다. 지불능력보다 계약자배당을 우선하는 것은 경쟁상 필요에 의해서 회사가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계약자이익 증대라는 명목하에 취해지는 부당한 조치이다. 즉, 일부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른 계약자의 責任準備金 積立財源을 희생한 것이다. 이는 계약자집단간의 公平性, 즉 「하나의 계약집단이 다른 계약집단의 희생하여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계약자배당을 지불능력에 우선하면 경쟁만을 의식하여 過當配當이 이루어져 지불능력은 더욱 취약해지고 결국 전체 계약자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왜냐하면 支拂能力 弱화가 더욱 심화되어 지불불능사태가 되거나 보험회사가 損失保全을 위해 保險價格을 인상하면 결국은 계약자가 손해이기 때문이다.

넷째, 지불능력 확보후 契約者配當 實施만이 업계간의 격차확대를 방지하고 自律競爭體制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經營效率 改善을 촉진하게 되어 低料·高配에 의한 궁극적인 契約者利益增大를 기할 수 있다.

따라서 保險產業의 健全성과 궁극적인 契約者利益保護를 위해서는 지불능력 확보를 우선하고

배당가능이익 범위내 배당이 실시되어야만 한다.

3. 國內 生保業界의 支拂能力

가. 支拂能力 檢證方法

지불능력은 責任準備金 積立狀態와 책임준비금의 계약자에 대한 支拂能力을 담보할 수 있는 餘裕準備金(솔벤시마진)에 의해 검증할 수 있다. 사실상 외국의 경우 최소 솔벤시마진 한도를 두어 그 이상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국가마다 환경이 상이하어 어느 방식이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으나 솔벤시마진 개념이 支拂能力을 檢證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편의상 솔벤시마진을 法定最小責任準備金인 解約還給金式 責任準備金이상 적립된 여유준비금으로 정의하면 솔벤시마진은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솔벤시마진 = 해약환급금식 초과준비금 + 총액배당
적립액 + 업법 97조 준비금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자산평
가치 장부가와의 차액

여기서 솔벤시마진은 장래 불확실한 리스크에 대비하여 각 개별자산별 리스크를 리스크 이론에 입각하여 계산된 금액 이상 적립되어야만 한다. 영국의 솔벤시마진 최소한도를 국내에 적용하면 국내생보사중 3개사만이 이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장래의 불확실한 리스크는 차치하고 현재시점에서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支拂能力 確保水準은 솔

벤시마진이 陽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지불능력 확보상태를 검증하고자 한다. 단, 여기서는 자산평가시 장부가와 의 차액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제외하기로 한다.

나. 國內 生保業界의 支拂能力 狀態

여기서는 앞에서 서술한 支拂能力 檢證方法에 의해서 국내 생보업계의 지불능력 상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1) 既存社

'92년 3월 현재 기존 6개사의 準備金 積立狀態는 純保積立 3개사, 解約積立未達 3개사로 되어 있다. 지불능력 상태를 보면 純保達成社의 경우 지불능력이 확보되어 있으나 解約式 未達 3개사의 경우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支拂不能狀態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정회사의 경우 총자산의 4.6% 정도 지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우기 향후 불확실한 리스크에 대비한 必要餘裕準備金を 최소 4% 정도로 설정한다면 해약적립미달 3개사의 경우 지불능력부족액이 총자산의 4.2~8.6% 정도가 된다.

<표-1>

既存社 支拂能力('92. 3)

(단위 : 억원)

		A 사	B 사	C 사
자 본 금		100	38	60
해약식손익	준비금 과 부족	△ 1,926	△ 100	△ 359
	총액 배 당 적립	118		
	누적 손익	0	16	△ 477
계		△ 1,808	△ 84	△ 836
지급능력 과 부족		△ 1,708	△ 46	△ 776
자본금 대비 부족율 (%)		1708.0	127.8	1293.3
총자산 대비 부족율 (%)		3.5	0.2	4.6

2) 新設社

신설사의 경우 責任準備金積立 狀態는 解約還給 金式 이상 적립하여 외형상 지불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나, 移延事業費 및 累積缺損金を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불능력을 살펴보면 외국사를 제외하고는 지불능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실질적으로 破産狀態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국사의 경우 總

資産의 5.3%가 부족하며 合作社와 地方社의 경우 2.5~2.6%가 부족한 상태이다. 신설사의 경우 상당기간 비차손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자본금중액이 없으면 지불능력 부족율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우기 향후 리스크에 대비한 最小必要餘裕準備金を 감안하면 총자산의 6.5~9.3% 정도가 부족하게 된다.

〈표-2〉

新設社 支拂能力('92. 3)

(단위 : 억원)

구 분		내국사	합작사	지방사	외국사
자 본 금		950	1,118	1,140	542
해약식손익	준비금 과 부족	0	62	261	0
	누적 결손	△ 246	△ 392	△ 216	△ 268
	이연 사업비	△ 1,813	△ 996	△ 1,230	△ 40
계		△ 2,059	△ 1,326	△ 1,185	△ 308
지 급 능 력 과 부족		△ 1,109	△ 270	△ 306	234
자 본 금 대 비 부족 율		116.7	24.2	26.8	△ 43.2
총 자산 대 비 부족 율		5.3	2.5	2.6	△ 29.3

4. 國內 生保業界의 契約者配當 與件

계약자배당은 지불능력을 우선 확보하고 나서 配當可能 剩餘金內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이 기준으로 국내 생보사중 3개사만이 支拂能力이 확보되어 있어 다른 회사는 確定配當만 실시하고 契約者配當은 실시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는 지불능력 측면은 차치하고 當期利益에 의해 당기배당 소요액 조달이 가능한가라는 측면에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가. 既存社

1) 利差

既存社의 경우 자산의 10~15% 수준이 株式市場의 長期沈滯에 의하여 低收益資産인 상태로 묶여 있고 더우기 막대한 株式評價損을 안고 있는 실정인에서 資産利回率이 저조하다. 더우기 과거에는 不動産評價나 債券收益의 조기계상에 의해 利差配當 및 長期維持特別配當 財源을 조달했으나 부동산평가가익이 소진되고 SWAP 거래가 사실상

곤란하게 됨으로써 配當財源 마련을 위한 다른 대책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사의 경우 利差配當 재원조달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資産評價損 狀態에서 잠재이익의 환원배당인 長期維持特別配當의 실시는 더욱 배당 압박을 초래하게 된다.

2) 死差

계속된 新規生命表 適用으로 死差益規模 증대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당기 발생된 死差益으로 사차 배당 재원의 자체조달은 가능한 상태이다.

3) 費差 등 其他部門 損益

1~2개사를 제외하고는 비차익은 실현가능하나 其他事業費, 準備金關係損失 등에 의한 손실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는 손실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우기 일부사의 경우 '92년도 결산시 解約還給金式 責任準備金 積立不足額(A사 : 1,926억, B사 : 359억)을 당기에 보전해야 하므로 결산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4) '92년 3월 결산기준 契約者配當 調達 狀況

既存社의 경우 '92년 3월 결산기준 계약자배당

조달상황을 보면 4개사는 當期利益 또는 전기 적립된 總額配當準備金 還入에 의해서 배당재원 조달이 가능하였으나 나머지 2개사는 부동산평가에

의해서 배당재원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떤 방식에 의해서든 配當財源을 조달하여 배당을 실시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표-3)

既存社 損益現況('92.3)

(단위: 억원)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배 당 전 손 익	△ 278	246	1,169	208	653	△ 254
배 당 소 요 액	468	226	1,247	200	821	150
배 당 후 손 익	△ 746	20	△ 78	8	△ 168	△ 404
부 동 산 평 가 액	972	-	-	-	-	425
총 액 적 립 환 입	△ 118	3	362	-	337	-
결 산 손 익	108	23	284	8	169	21

나. 新設社

1) 死差

기존사와 마찬가지로 死差配當은 당기 발생한 死差益에 의해 자체조달 가능하다.

2) 費差

신설사의 경우 事業費(예정사업비의 50% 한도)를 이연처리하고도 超過事業費가 28.5%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費差 計上基準인 사업비 이연전으로는 超過事業費率이 106%정도로 막대한 수준이며 향후 수년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더우기 移延事業費를 상각해야 하는 설립 6차년도부터는 決算壓迫이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 利差

運用資産의 收益率은 기존사보다 높으나 非運用資産(이연사업비, 임차보증금) 점유율이 20% 수준으로 너무 높아 資産利回率面에서 기존사보다 더 불리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차배당 재원 자체

조달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더우기 이연자산비율이 높은 회사는 배당재원 조달은 고사하고 支拂不能狀態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일부 신설사의 경우 '92년 결산시 擔保力 確保基準 充足을 위해서는 자본금 증액이 요구되기도 할 것이다

4) '92년 3월 결산기준 契約者配當 調達 狀況

新設社의 경우 <표-4> 에서 보면 配當前損益 自體가 손실상태인데도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제까지는 배당대상계약이 적어 契約者配當規模는 적었으나 설립후 연도가 경과함에 따라 配當對象契約이 급증하게 되어 향후 몇년간은 배당규모가 매년 2~2.5배로 증가하게 되어 배당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쨌든 신설사의 경우 當期利益이나 다른 방식에 의해서가 아닌 事業費를 이연함으로써 실질적인 배당 재원을 조달하지 않는 형태로 결산을 행하여 왔다.

또한 사업비를 이연하고도 配當前損益이 결손으

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赤字配當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丑-4) 新設社 損益現況('92.3)

(단위 : 억원)

	내국사	합작사	지방사	외국사
배당전손익	△1,175	△ 738	△ 676	△ 85
배당소요액	59	30	45	3
배당후손익	△1,234	△ 768	△ 721	△ 88
사업비이연	1,153	644	654	27
총액적립환입	-	△ 28	-	-
결산손익	△ 81	△ 152	△ 67	△ 61

Ⅲ. 現行 契約者配當制度의 問題点

현행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契約者配當制度의 문제점을 支拂能力, 配當規模 適正性, 配當 安定性 및 繼續性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1. 契約者配當 先決要件 充足

契約者配當의 先決要件은 무엇보다도 支拂能力 確保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생보사의 지불능력은 극히 취약한 상태이다. 사실상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지불불능상태이거나 파산상태로 보아야 옳을 정도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配當競争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무리한 契約者配當을 실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지불능력 확보보다도 당장 현재 계약자에게 많은 배당금을 주는 것을 정책의 우선으로 하면 결국은 계약자, 회사 및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불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責任準備金과

이외 계약자에 대한 지불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内部留保된 剩餘金과 資本金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지불능력 확보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즉, 책임준비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개별적인 위험외에 장래 예측 또는 통제하기 어려운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투자리스크 등 회사의 총체적인 위험에 대하여 책임준비금외에 별도로 餘裕準備金을 적립하도록 하고 이를 규제·감독함으로써 支拂能力을 확고히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配當規模의 適正性

배당규모의 적정성이라는 것은 「配當金은 配當可能剩餘金內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配當原則」이다. 생보는 잉여금중 장래 非常危險에 대비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배당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경영의 완충장치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일부는 内部留保하고 殘餘金額을 配當可能剩餘金으로 하여 이 범위내에서 배당금을 결정해야 한다.

더우기 국내는 確定配當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손실이 나더라도 실시하는 最低 配當基準인 셈이다. 따라서 利益配當인 계약자배당은 지불능력을 우선 확보한 후 이익범위내에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생보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配當可能 剩餘金을 초과한 배당이 허용되고 赤字配當까지 허용되고 있다. 즉, 配當財源을 不動産 評價 또는 事業費移延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조달하고 資産利回率을 초과하는 이차배당과 자산의 잠재익을 환원하는 형태인 長期維持特別配當을 손실 상태에서도 실시하였다.

또한, 국내생보는 경영여건이 계약자배당 도입

시기인 '88년 이후 많이 변했음에도 配當率의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내부유보가 충분한 상태이고 환경변화가 일시적이라고 본다면 당연한 것이나 실제 국내의 생보여건은 분명히 이와 같은 상황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配當率引下가 사실상 안된 이유는 첫째, 정부당국이 상위사의 경우 最高配當率의 지속을 행정지도하고 둘째, 다른 회사는 자기회사의 능력과 관계없이 경쟁을 위해서 最高配當率에 의한 배당을 실시하려고 하고, 셋째, 제도적으로 이런 병폐를 막을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確定配當을 最低配當으로 하고 지불능력을 확보한 후 발생한 이익에 의해서 配當可能剩餘金을 산정하고 이 범위내에서 계약자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불능력 약화를 방지할 수 있고 생보사의 經營效率改善을 기할 수 있다.

3. 配當의 安定性和 繼續性

생명보험계약은 특정년도에 한하여 본다면 많은 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매사업년도에 발생된 손익에 의해서 배당을 실시한다면 配當規模의 변동이 심하고 배당금이 없는 경우도 생긴다. 이러한 경우 계약자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고 계약자간의 公平性을 기할 수 없게 된다. 配當의 安定性和 繼續性이라는 것은 「경제변동이 심하지 않는 한, 매년 배당금이 증가하여 계약자의 순부담액은 감소할 것이라는 계약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1개년도가 아닌 전보험기간에 걸쳐 각계약자간의 公平性을 확보한다는 配當原則」을 말한다.

그러나 국내생보는 다음 세가지 측면에서 볼 때

配當의 安定性和 繼續性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契約者配當準備金 事前積立 體制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배당금지급을 위해서는 사전에 配當準備金을 반드시 적립해야만 한다. 국내 주식배당의 경우에도 배당재원이 있어야만 배당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契約者配當의 경우 배당재원이 없어도 우선 配當率을 결정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고 사후에 발생한 이익금으로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利益規模가 적은 경우에는 기지급된 배당금도 보전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次期配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新舊契約集團間의 公平性을 기할 수 없게 된다.

둘째, 內部留保의 裝置는 있으나 안정적인 배당 실시를 위한 內部留保 積立金額이 극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내부유보된 금액이 충분하면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損益惡化의 경우 내부유보된 금액을 사용하여 전년수준의 배당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국내생보의 경우 내부유보는 고사하고 最小 支拂能力조차 부족한 상태이다.

셋째, 이익의 원천에 따라 每年配當과 特別配當의 二元化된 配當體制를 갖추지 못했다. 이익은 經常利益과 賣却益과 같은 特別利益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별이익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이익으로 장래의 손실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며 곧바로 배당으로 환원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배당은 經常利益을 배당하는 每年配當과 내부유보된 特別利益을 소멸계약에 대해 정산하는 特別配當으로 구분하여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國內契約者配當은 이익의 원천을 구분하지 않고 실시되고 있다.

IV. 國內 契約者配當의 改善方向에 대한 意見

1. 契約者配當에 앞서 支拂能力 確保에 우선해야 한다.

국내 생보사의 지불능력 상태는 극히 위험수위에 와 있다. 생보의 건전육성 및 契約者 利益保護를 위해서 최소한도의 支拂能力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정책당국은 정책의 최우선을 지불능력 확보에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責任準備金 積立에 의한 支拂能力 確保體制에서 슬벤시마진 개념에 의한 支拂能力 確保體制로 轉換함으로써 가능하다. 또한 업계의 지불능력 충실화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最小支拂能力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자배당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 지불능력 부족액을 매년 균등보전하도록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契約者配當을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2. 契約者配當은 配當可能剩餘金內에서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정책당국에서 규정한 지불능력을 확보한 회사에 한해서 배당을 허용하되 配當率水準은 배당가능잉여금내에서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配當原則에 맞는 배당방법이며 업계의 過當配當競爭을 억제하고 회사간의 재무구조 상태의 격차심화를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다.

국내에는 손실이 나더라도 실시할 수 있는 確定配當이 있으므로 契約者配當은 지불능력을 확보한

후 이익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配當能力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생보사중 3개사를 제외한 회사는 支拂能力이 부족하거나 支拂不能狀態에 있으며, 신설사의 경우 손실상태인데도 契約者配當을 最高配當率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배당능력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도 동일한 配當率을 적용하여 배당하는 劃一配當이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이 획일배당이 계속된다면 열세사의 경우 지불능력은 더욱 악화되고 회사간의 격차도 더욱 심화되어 정부정책의 선택폭도 한층 제한될 것이다. 또한 우세사의 경영노력을 약화시켜 결국 계약자의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差等配當 實施만이 업계간의 격차확대를 방지하고 自律競爭體制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契約者利益 保護와 經營效率 改善을 촉진할 수 있는 최선책이다.

4. 契約者配當準備金 積立後 配當金 支給體制로 전환해야 한다.

契約者配當金を 지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配當準備金を 적립한 후에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過當配當을 억제하고 支拂能力 弱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계약자간의 公平性 및 계약자배당의 安定性·繼續性を 기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배당지급재원이 없이 우선 배당금을 지급하고 사후에 충당하는 방식은 조기에 시정되어야 한다.

V. 結論

국내생보는 계약자배당 도입당시와 달리 최근에 支拂能力이 극히 취약해졌다. 이는 경영여건의 악화에 따른 生保 收益性 惡化에 기인하지만 업계가 過當配當競爭을 하여 최고배당율에 의한 배당실시를 위하여 무리하게 配當財源을 조달한 것도 상당한 이유가 된다.

향후 생보의 경영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와 같은 형태의 배당정책을 계속한다면 일부 生保社의 도산은 불가피하며 이는 생보의 公信用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 契約者配當制度를 전면 재검토하여 합리

적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國內 契約者配當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면 첫째, 契約者配當에 앞서 責任準備金 積立만이 아닌 솔벤시마진 개념에 의한 總體的인 支拂能力 確保를 기해야 하고, 둘째, 계약자배당은 配當可能剩餘金 範圍內에서 실시해야 하며, 셋째, 會社別 利益規模에 따라 差等化되어야 하고, 넷째, 契約者配當準備金 積立後 支給體制로 轉換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 自律競爭體制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生保 經營效率 改善을 촉진하고 이로써 契約者 權益保護와 生保經營의 健全性을 동시에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